



| | |
|--------------|----------------------------|
| 의안번호 | 제 2007 - 4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07. 8. 20. (제 3 차 회의) |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 | |
|-------|--------|
| 제 출 자 | 수석전문위원 |
|-------|--------|



<차 례>

| | |
|-----------------------------------|----|
| I. 경과 | 1 |
| 1.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1 |
| 2.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 정리를 위한 실무팀·총괄팀 회의 | 1 |
| 3.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2 |
| II. 전문위원 위촉 및 편제 | 2 |
| 1. 전문위원 명단 | 2 |
| 2. 전문위원 편제 | 3 |
| III. 전문위원 운영방안 | 4 |
| 1. 검토배경 | 4 |
| 2. 주요 쟁점 | 4 |
| 3. 전문위원 운영방안의 규정 형식 | 4 |
| 4. 전문위원 연구결과의 위원회 보고 주체 | 5 |
| 5. 전문위원 전체회의와 팀별 회의의 관계, 총괄팀의 역할 | 7 |
| 6. 전문위원 운영방침에 대한 위원회 의결안건 상정 여부 | 8 |
| 7. 소결론 : 전문위원 운영방침 | 9 |
| IV. 연구계획안 | 13 |
| 1. 제시된 연구주제 | 13 |
| 2. 2007년도 연구주제 | 13 |
| 3. 추후 연구계획안 | 13 |
| V. 우리나라 양형 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 15 |
| VI. 전문위원 회의 향후 일정 | 16 |

별첨 전문위원 회의 개최식 및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전문위원 제2차 회의 회의록

I. 경과

1.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가. 위촉식

- 2007. 7. 18. (수) 11:45 ~ 12:00 대법원 16층 회의실 1601호
- 참석자
 - 곽동우, 김용철, 박형관, 손철우, 신광렬, 이주형, 이호중, 조국, 진선미, 최석윤 전문위원(10명, 이상 가나다 순, 이하 같음)
 - 상임위원, 간사(단장) 배석

나. 제1차 전체회의

- 같은 날 13:40 ~ 17:50 대법원 16층 회의실 1601호
- 참석자
 - 위촉식 참석·배석자 외 이천현 전문위원(11명)
- 제1차 전체회의 안건
 - 양형위원회 현황 및 워크숍 개최 계획안(단장)
 -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손철우 전문위원)
 -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이주형 전문위원)
 -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최석윤 전문위원)

2.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 정리를 위한 실무팀·총괄팀 회의

- 제1차 회의 결과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 정리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결정
- 실무팀 회의 개최

- 2007. 7. 31. 10:00 ~ 17:40
- 손철우, 이주형, 조국 전문위원 참석, 간사(단장) 배석
-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 쟁점 정리 및 협의
- 총괄팀 회의 개최
- 2007. 8. 10. 12:30 ~ 14:10
- 김용철, 박형관, 신광렬, 조국 전문위원 참석, 간사(단장) 배석
-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 협의

3.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2007. 8. 10. 14:20 ~ 18:20 대법원 16층 회의실 1601호
- 참석자
 - 김한균, 박형관, 서보학, 손철우, 신광렬, 이주형, 이천현, 이호중, 조국, 조은경, 최석윤 전문위원(11명)
 - 상임위원, 간사(단장) 배석
- 제2차 전체회의 안건
 -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2차)
 - 우리나라 양형 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전문위원 발표)
 - 운영지원단 양형자료조사 업무 현황 등(단장)
 - 향후 전문위원 전체회의 일정 수립

II. 전문위원 위촉 및 편제

1. 전문위원 명단

| 성 명 | 소 속 | 비 고 |
|-------|--------------------------|--------|
| 김 인 겹 | 서울북부지방법원 | 수석전문위원 |
| 곽 동 우 | 법무법인 화우 | 전문위원 |
| 김 용 철 | 법무법인 바른 | |
| 김 한 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
| 박 형 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파견근무) | |
| 서 보 학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
| 손 철 우 | 법원행정처 | |
| 신 광 렬 | 사법연수원 | |
| 이 주 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파견근무) | |
| 이 호 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 |
| 이 천 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조 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
| 진 선 미 | 법무법인 덕수 | |
| 조 은 경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
| 최 석 윤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양경찰학과 | |

2. 전문위원 편제

- 운영지원단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편제안에 따라 편제를 마쳤음

| 구 분 | 성 명 |
|-----|------------------------------|
| 총괄팀 | 김용철, 김인겸, 박형관, 신광렬, 조국 |
| 제1팀 | 김한균, 서보학, 신광렬, 이호중, 이주형, 진선미 |
| 제2팀 | 곽동우, 박형관, 손철우, 이천현, 조은경, 최석윤 |

III. 전문위원 운영방안

1. 검토배경

- 제1차 회의에서 양형위원회규칙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전문위원’ 관련 규정만으로는 전문위원의 연구업무를 진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전문위원의 회의 개최 방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식, 전체회의와 1, 2팀 회의의 관계 등 전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규범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음

2. 주요 쟁점

- 전문위원 운영방안의 규정 형식
- 전문위원 연구결과의 위원회 보고 주체
- 전문위원 전체회의와 팀별 회의의 관계, 총괄팀의 역할
- 전문위원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안건 상정 여부

3. 전문위원 운영방안의 규정 형식

가. 쟁점

- 전문위원의 연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어

편 형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나. 방안

-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전문위원의 자율적인 규범을 정하는 방안(1안)
- 전문위원 운영방안을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소정의 운영세칙¹⁾으로 제정하는 방안(2안)

다. 논의결과

- 1, 2안 모두 전문위원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취지가 전문위원이 위원회를 보좌하면서 연구업무 및 회의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 전문위원 운영 초기에 향후 제기될 모든 문제를 예상해서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영 초기에는 자율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1안으로 의견을 모았음

4. 전문위원 연구결과의 위원회 보고 주체

가. 쟁점

- 전문위원의 연구 및 토론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1)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나. 방안

- 원칙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주무연구위원에게도 보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1안)
 -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전문위원 전체가 합의한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고자는 원칙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되어야 함
 - 복수의 전문위원이 연구를 담당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위원 별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무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보고내용이 매우 전문적인 경우 수석전문위원이 주무전문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면 충분함
- 수석전문위원은 간략한 경과를 보고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담당한 주무전문위원이 보고하는 방안(2안)
 - 원칙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면 위원회가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전문위원이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한 취지에 반함
 - 전문위원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각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를 담당한 전문위원이 아닌 제3자가 보고를 하는 경우 연구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다. 논의결과

-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연구결과를 요약 보고한다.
 -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세보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위원은 상세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장이 허가한 경우 상세보고를 할 수 있다.

5. 전문위원 전체회의와 팀별 회의의 관계, 총괄팀의 역할

가. 쟁점

- 전문위원 회의를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팀별회의(1, 2팀 회의 후 총괄팀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나. 방안

-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1안)
 -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쟁점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각론적인 내용이라도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팀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전체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 각자의 개별적 능력을 중시한다면 전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회의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전체회의가 중심이 되어야 함
- 팀별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2안)
 - 양형위원회규칙에서 1, 2팀과 총괄팀을 구분하였고, 총괄팀의 기능이 전체 전문위원의 의견을 집약하자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하면 충분함
 - 주제에 따라 전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도 있으므로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총괄팀의 역할

- 총괄팀 회의를 1, 2팀과 전체회의 사이에 하나의 단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총괄팀은 독자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 2팀 회의와 전체회의 사이에 업무분장 문제나 의견조정,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다. 논의결과

-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를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다만, 전체회의가 월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 팀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총괄팀 논의를 거쳐 주무전문위원이 제1, 2팀 구분 없이 지정되어 전체 전문위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 2팀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1, 2팀별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팀 회의 후 총괄팀 회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연구주제를 논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음

6. 전문위원 운영방침에 대한 위원회 의결안건 상정 여부

가. 쟁점

- 전문위원 운영방침에 대하여 위원회에 안건상정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나. 방안

- 안전 상정 형태는 위원장 결정사항임을 전제로 함
- 전문위원 내부의 자율적인 규범을 설정한 것이므로 보고안전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5호 소정의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의결안전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7. 소결론 : 전문위원 운영방침

-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전문위원은 내부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전문위원 운영방침’을 설정하였음
-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석전문위원, 제1·2 팀장 및 전문위원의 관계

수석전문위원과 제1·2 팀장 및 전문위원은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2. 주무전문위원의 지정

- (1) 주무전문위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2) 다양한 연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복수의 주무전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3) 주무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주무전문위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무전문위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양형위원회에 제출된다.
- (4) 수석전문위원 및 팀장도 주무전문위원이 되거나 연구보고서를 제

출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회의

(1)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은 총괄팀에서 임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팀별회의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전체회의가 월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팀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팀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팀장은 해당 팀 소속 전문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전체회의와 팀별회의의 관계

① 총괄팀 논의를 거쳐 주무전문위원이 제1, 2팀 구분 없이 지정되어 전체 전문위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 2팀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 2팀별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팀 회의 후 총괄팀회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연구주제를 논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4) 회의소집 방법

회의 소집권자는 운영지원단을 통하여 전문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한다.

(5) 회의 일정 등의 통지

운영지원단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

소 및 안건을 통지한다. 다만 이미 구두 통지된 경우에는 운영지원단의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6) 회의 자료의 배부

운영지원단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모든 전문위원에게 배부한다. 팀별 회의 자료도 모든 전문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7) 회의의 속기

- ① 전체회의는 속기원으로 하여금 속기하도록 한다.
- ② 팀별회의는 해당 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녹음할 수 있다.
- ③ 운영지원단은 각 팀에서 요구하는 경우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한 속기록을 작성·제공한다.

(8) 속기록,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 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체회의는 속기록도 작성한다.
- ② 운영지원단은 회의록, 속기록과 팀별회의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물을 2년간 보존한다.

(9) 회의 결과의 공개

회의 경과와 회의 결과의 요지를 공개한다.

(10) 회의 장소

팀별회의는 팀 자율적으로 대법원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4.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제1, 2팀 보고서

- ① 제1, 2 팀장은 팀별회의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 전문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총괄팀에 제출하되, 쟁점에 대한 의견

이 나뉜 경우 보고서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기재한다.

- ② 제1, 2 팀장은 주무전문위원 등 전문위원 개인의 보고서(의견서 포함)도 총괄팀에 함께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

- ① 수석전문위원은 안건에 따라 총괄팀회의 또는 전체회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팀 전문위원 또는 모든 전문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수석전문위원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경우 보고서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무전문위원 등 전문위원 개인의 보고서(의견서 포함)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5. 양형위원회 보고 방법

- (1)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연구결과를 요약 보고한다.
- (2)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세보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위원은 상세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전문위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장이 허가한 경우 상세보고를 할 수 있다.

6. 전문위원의 양형위원회 회의 배석

- (1) 전문위원은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 (2) 주무전문위원 또는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전문위원은 해당 안건이 심의되는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야 한다.
- (3)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위원은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야 한다.

7. 연구반의 구성·운영

수석전문위원은 총괄팀 또는 전체회의를 거쳐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3인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8. 운영지원단에 대한 설명 요청

전문위원은 운영지원단장에게 전문위원의 조사·연구업무 및 회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IV. 연구계획안

1. 제시된 연구주제

- 의결안건 「2007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설명자료 2쪽 이하 참조

2. 2007년도 연구주제

- 의결안건 「2007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설명자료 10쪽 이하 참조

3. 추후 연구계획안

가. 개요

- 2007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관련 쟁점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임
- 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회의에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나. 기본적 범죄유형과 양형인자의 분석

-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와 개별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분석
 - 양형실무에 나타난 양형인자와 규범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양형인자를 추출
 - 범죄행위적 양형인자와 범죄행위자적 양형인자를 고려
- 양형인자 분석을 통해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양형실무의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범죄수준과 기준 형량을 결정
- 일반적·개별적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방향을 결정함으로써 가중 감경 양형인자를 분류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안 및 계량화 방안 등을 연구

다. 양형기준 설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1) 범죄전력

- 범죄전력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안에 관한 연구
- 누범가중에 대한 기준, 집행유예 결격자 처리에 대한 기준을 논의

(2) 재범예측성 판단과 실형·집행유예의 기준

- 재범예측도구를 개발하여 양형심리에 적용하고,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선택의 기준을 연구

(3) 작량감경 등 임의적 감경의 기준

- 작량감경, 자수감경 등 법률에 규정된 임의적 감경 규정의 적용 기준과 수사협조 시의 감경 등에 대한 기준을 연구

(4) 경합범 처리방안

- 대상범죄와 대상범죄 사이의 경합범, 대상범죄와 비대상범죄의 경합범, 동종범죄와 이종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한 가중 방식을 연구
-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률 하에서 가중 범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

(5) 범죄인의 개별적 특성 반영 방식

- 형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의 성행, 지능, 환경 등 범죄인의 개별적 특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라.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작성

- 기본적 범죄유형에 대한 가중감경사유, 형종 및 형량의 결정, 양형기준의 형태와 구조 등을 연구

마.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연구

- 양형조사의 주체, 유죄협상제도 도입 문제, 교도소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대책, 중간처우형 도입 문제, 공판절차 이분론 등을 연구

V. 우리나라 양형 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 전문위원 제2차 회의에서 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전문위원의 기초보고가 있었음

- 이에 대해서는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VI. 전문위원 회의 향후 일정

- 2007. 9. 14.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제2차 회의 결과에 따른 팀별 일정을 수립 중에 있음

별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식 및
제1차 회의 회의록**



2007. 7. 18.

양 형 위 원 회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회식 및 제1차 회의

1. 일 시 2007. 7. 18.(수) 13:40 ~ 17:50
2. 장 소 대법원 1601호
3. 참석자 별지 기재와 같음
4.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수석전문위원 _____

간 사 _____





참석자명단

상임위원 : 성 낙 송
전문위원 : 곽 동 우
전문위원 : 김 용 철
전문위원 : 박 형 관
전문위원 : 손 철 우
전문위원 : 신 광 렬
전문위원 : 이 주 형
전문위원 : 이 천 현
전문위원 : 이 호 중
전문위원 : 조 국
전문위원 : 진 선 미
전문위원 : 최 석 윤
간 사 : 운영지원단장

- 사회자(지원단 기획운영과 하순원 사무관)
 -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식을 선언함
- 상임위원
 -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부탁 및 전문위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인사말씀을 하심
- 사회자
 - 전문위원 및 운영지원단 직원을 소개
 - 전문위원 전체회의 시작을 선언
- 운영지원단장
 -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회의자료인 「양형위원회 현황 등 보고」에 따라 보고

(이하 신광렬 전문위원이 회의 주재)

- 신광렬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 외국에 체류 중인 관계로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음
 - 먼저 전문위원 운영방안과 연구계획안에 관하여 손철우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 최석윤 전문위원 순으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음
- 손철우 전문위원
 -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회의자료인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에 따라 보고
- 이주형 전문위원
 -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회의자료인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에 따라 보고
- 최석윤 전문위원
 -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회의자료인 「전문위원 운영방안 및 연구계획안」에 따라 보고
- 신광렬 전문위원

- 전문위원 운영방안에 관하여 먼저 논의하겠음
- 조국 전문위원
 - 이주형 전문위원의 의견은 전문위원의 연구결과를 전문위원 각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자는 의미인지 궁금함
- 이주형 전문위원
 - 전문위원 본인이 연구한 부분은 전문위원 본인이 위원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팀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전문위원이 연구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이 수정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전문위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정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 다만, 전문위원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수정되는 경우 연구한 전문위원 본인이 수긍할 수 있다면 수정 가능할 것임
- 손철우 전문위원
 - 전문위원 회의는 의결해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회의체가 아님
 - 총괄팀의 역할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임
 -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전문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배석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타당함
- 이주형 전문위원
 - 연구한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수석전문위원이 종합적인 보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한 전문위원이 직접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정확성을 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모습이어야 함
- 조국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음
 - 수석전문위원의 역할도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해결 가능함

- 전문위원 보고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의 의견을 왜곡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함
- 수석전문위원이 연구한 전문위원보다 전문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전문위원 회의 자체가 협의체적 성격을 가짐
 -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팀 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는 수석전문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총괄팀 회의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박형관 전문위원
 - 위원회 3차 회의 안건을 알려주면 그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전문위원 운영세칙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 관련 사항을 알려주기 바람
- 운영지원단장
 - 위원회 3차 회의 안건은 오늘 논의되는 바에 따르겠지만, 양형실무의 문제점과 원인에 관한 기초보고를 하고,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및 그에 따른 위원회 향후 일정을 보고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전문위원 운영규정을 먼저 제정하는 방안과 운영규정 없이 먼저 운영을 한 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운영규정을 먼저 제정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권해 드리고 싶음
 - 현재 위원회 예산은 양형제도 개선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전문위원께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기획하면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신광렬 전문위원
 -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 운영규정을 만들었는지 궁금함
- 운영지원단장
 -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전체 운영세칙을 만들고 전문위원 운영규정·운영세칙 부분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음
- 조국 전문위원
 -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상근 체제임에 비하여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은 비상근 체제이므로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임
- 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기준은 준입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전문위원의 역할을 상정하여야 함
 - 전문위원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녹취가 되어야 하는지, 전문위원이 안건 및 회의자료는 언제 받는지, 팀에서의 의결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소수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함이 있어야 함
 - 전문위원 회의를 두세 번 진행하고 나서 운영세칙을 정하면 중요한 안건 토론은 이미 이루어진 후일 것이므로 먼저 정할 필요가 있음
- 진선미 전문위원
 - 오늘 발표문에는 장기적인 안건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안건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오늘 결정을 해야 하는 안건을 정리해서 먼저 논의를 하면 좋겠음
- 신광렬 전문위원
 - 전문위원 운영세칙을 만들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오늘 발표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논의한 후에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이호중 전문위원
 - 운영세칙을 여러 조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만 합의 형태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임

- 신광렬 전문위원
 - 회의를 몇 번할 것인지 보고를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박형관 전문위원
 - 전문위원 회의에서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정리되어야 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전문위원들은 병렬적 관계에 있고 전문위원단은 의결기구가 아님
 - 전문위원 회의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보고서에 모두 부기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
- 이주형 전문위원
 - 단순히 어느 한 전문위원의 연구에 대하여 다른 전문위원의 의견을 다수의견·소수의견으로 부기하는 방식은 전문위원 회의를 거치는 의미가 크지 않음
 -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충분한 토론을 하고 토론에 의해서 의견이 합치되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이나 개별의견을 부기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 조국 전문위원
 - 전문위원 운영세칙에 들어갈 핵심내용이 전문위원의 발표기회의 문제, 전문위원 팀별 내의 논의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세칙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음
- 이주형 전문위원
 - 전문위원 보고방식이나 합의방식에 관한 문제가 운영세칙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음
- 박형관 전문위원
 -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의 개최 원칙, 안건 및 회의자료 배부시기,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자료 보존방법 등이 운영세칙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전문위원 한두 명이 정리해서 운영세칙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임
- 손철우 전문위원
 -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전문위원이 해야 할 일이 먼저 운영세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지 않음
 - 오늘 정리하여야 할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연구계획안에 관한 토론과 향후 일정을 수립하는 일인데, 연구계획안 정리에 관한 실무팀을 구성하면 다음 회의 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위원 회의시기를 1주일에 1회로 하면 회의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 먼저 연구종료시기를 정하고 연구종료시기에 맞춰서 팀회의를 열거나 전체회의를 여는 등 회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선미 전문위원
 - 운영세칙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위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면 될 것임
 - 운영세칙의 내용에는 안전을 미리 볼 수 있게 기한을 정하는 것, 회의의 횟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실무팀을 꾸려 전문위원들의 제안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합의해 두어야 할 회의운영상의 원칙 등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운영세칙을 만들 것인지는 다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실무팀에서 정하도록 하겠음
- 조국 전문위원
 - 운영세칙 제정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운영세칙 초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를 바람
- 신광렬 전문위원
 - 전문위원 운영방안에 관한 안을 정리할 실무팀을 손철우, 이주형, 조국 전문위원과 단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팀은 다음 회의 때까지 안을 정리해서 제출하기 바람

- 원칙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진선미 전문위원
 - 일반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보고서에 연구한 전문위원의 인격이 담겨 있다면 분리해서 별도 보고하면 될 것임
- 이호중 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위원회에 올라간다면 전문위원 개인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꼭 해당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음
 - 기본적인 보고체계는 수석전문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특정 전문위원에게 보고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불가피한 외부사정이 있다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주무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타당함
 -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고를 할 때 주무전문위원이 배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을 해서 답변을 하는 정도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음
- 박형관 전문위원
 - 전문위원이 지금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쟁점을 나누어 연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전문위원 각자가 보고할 수밖에 없음
 - 배석정도가 아니라 전문위원 자신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진선미 전문위원
 - 원칙적으로 보고의 주체는 수석전문위원이고, 전문위원이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보고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존중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을 제안함
- 조국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 위원이 전문위원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므로 보고자가 누구인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음
- 이호중 전문위원

- 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는지 의문임
- 해당 주무전문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배석해서 위원들의 전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경우 보충해서 답변하면 충분함
- 최석윤 전문위원
 -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여러 개인 경우에 보고자에 따라 설득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호중 전문위원
 -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회의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자신의 개인 의견을 보고하는 것이 아님
 - 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전문위원의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가장 충실하게 요점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야 함
- 손철우 전문위원
 - 한 차례의 회의에서 많은 쟁점을 다루게 되는데, 보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 회의 운영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 보고를 드리고, 양형위원회 위원이 의견을 낸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충적으로 들어 보겠다고 요청하였을 때 해당 전문위원이 보고하면 됨
- 박형관 전문위원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로 보고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요약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 양형기준 설정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각자가 책임져야 하고, 전문위원의 관계가 병렬적이라는 것은 연구한 전문위원 각자가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이주형 전문위원
 - 연구한 사람이 보고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고, 연구한 사람이 자신의 보고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직접 보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곽동우 전문위원
 -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모든 양상을 예상해서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

- 양형위원회가 전문위원들의 보고를 듣기 위한 제도는 아니고, 보고는 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
-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고, 특정 주제에 관해서 특별히 연구한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그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음
- 주무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응의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조국 전문위원

-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전문위원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함
- 보고는 구술보고와 서면보고가 있는데, 서면보고는 모두 가능할 것이고, 구두보고는 수석전문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보충적으로 해당 전문위원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서 소수의견의 구술보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개의 해결방안이 제출된 경우 해결방안마다 각각 보고자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고, 이 경우 회의가 매우 비효율적일 것임

○ 신광렬 전문위원

- 객관적인 보고는 주무전문위원이 아닌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
-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자리에 배석한 주무전문위원이 구두로 발표할 수 있을 것임

○ 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의 취지는 수석전문위원이 주로 보고하고 주무전문위원은 배석하라는 취지가 아님
- 운영규정안에는 당초 수석전문위원만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취지는 위원회가 전문위원 각자의 의견을 듣자는 취지로 해석됨

○ 신광렬 전문위원

- 쟁점은 원칙적으로 누가 보고를 할 것이냐의 문제와 소수의견이라든지

- 개별의견을 보고할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갖느냐의 문제인 것 같음
- 원칙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함
- 박형관 전문위원
 - 원칙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에 반대함
 - 이주형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전문위원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하게 하고 그 보고를 듣겠다는 양형위원회의 의사라고 보아야 함
 - 연구를 한 전문위원이 연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그가 다수의견에 속했거나 소수의견에 속했든 상관없이 직접 보고하고, 그 사람이 자기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함
 - 조국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전문위원이 들어간 이유는 전문위원에게 보고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기 위한 양형위원회의결의라고 해석됨
 - 하지만, 운영규정 제4장에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고,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에서 별도로 수석전문위원을 두어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함
 -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관계가 명령복종관계는 아니지만 일정한 역할의 차이는 있음
 - 손철우 전문위원
 -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체회의나 총괄팀 회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대신 보고하는 것이 아님
 -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주체인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보충적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는 것임
 - 신광렬 전문위원
 - 최종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최종보고서에 개별보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진선미 전문위원

- 다수의견·소수의견이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함
- 본인이 연구를 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전문위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면 될 것 같음

○ 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규칙 제정과정에서 총괄팀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주무전문위원의 연구에 대해 팀별회의를 거쳐서 총괄팀으로 가는 경우 총괄팀의 최종보고서는 기존 보고서의 편집 정도 의미밖에 없을 것인데, 그 내용을 총괄팀의 팀장인 수석전문위원이 항상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임

○ 운영지원단장

- 운영규정 제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보고자를 전문위원 쪽에서는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운영지원단 쪽은 단장이 하는 것으로 하여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올렸는데, 보고자가 양쪽 모두 법관이므로 폐쇄적이라는 점과 단장이 보고를 하는데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보고의 주체에 전문위원을 추가하게 되었음
- 팀별로 연구된 것이 총괄팀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경우, 어떤 주제에 대해 복수의 주무전문위원이 지정된 경우, 1·2팀에서 나누어서 연구를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음
- 전문위원 보고에 관한 문제는 소수자 보호의 문제임
- 소수의견이나 개별의견을 낸 전문위원이 직접 보고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 그 전문위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은 수석전문위원에게 요청해서 보고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반대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면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임

○ 신광렬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체계와 관련해서는 손철우, 이주형, 조국 전문위원과 운영지원단장으로 구성된 실무팀에서 정리해서 제출

하기 바람

- 업무분장은 전체회의에서 과제배분이 팀별로 되고 세부적인 부분은 팀별회의나 총괄회의,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회의개최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이호중 전문위원
 -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쟁점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각론적인 내용이라도 서로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전체회의는 2주에 1회 정도 정례화하고, 팀별 회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 신광렬 전문위원
 - 팀별 회의도 전체회의 중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주 한번씩 회의를 해야 하면 그 부담은 적지 않을 것임
- 조국 전문위원
 - 전체회의는 월 1회로 생각하고 있고, 팀별 회의는 그 전에 해야 할 것 같음
 - 전체회의 중간에 양형위원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 같음
- 진선미 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정은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조국 전문위원
 - 연구계획안의 윤곽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정하기는 곤란함
- 박형관 전문위원
 - 이슈 메이킹(issue making)을 제안함
 - 이주형 전문위원의 발표문 별지에 6가지 ‘과제목록’이라고 해서 전문위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를 샘플로 제시하였음
 -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중간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이슈, 구체적으로 보고서 수준으로 되어야 할 이슈 등을 취합해서 전문위원들이 연구할 이슈를 정리해야 전문위원 간 업무분장이 될 것 같음
- 신광렬 전문위원

- 전체회의는 월 1회, 팀별 회의는 연구일정에 따라 개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함
- 조국 전문위원
 - 법원에서도 연구주제 목록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음
- 손철우 전문위원
 - 발표문 14페이지에 연구주제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음
 - 대주제에 맞게 소주제를 나누었는데 소주제를 더 세분화할 수 있음
 - 실무팀에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만들어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고 전문위원님들의 추인을 받는 형태를 제안함
- 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인자 분석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상범죄의 양형인자와 범죄유형 세분화를 뒤에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전체적으로 모든 이슈를 같이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음
 - 연구주제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손철우 전문위원
 - 모든 주제에 대해 동시에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연구시기를 정해서 진행하자는 취지임
- 이주형 전문위원
 - 발표문 별지의 ‘과제목록’도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작성한 것임
 - 과제목록의 ‘양형인자 분석’과 ‘분석 및 통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어느 정도 병행을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주제는 어느 정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경우가 많음
- 신광렬 전문위원
 - 모든 연구주제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체회의에서 연구주제의 선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회에 논의하기로 하겠음
 - 독립된 회의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박형관 전문위원
 - 전문위원들이 비상근이니까 대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전문위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함

○ 운영지원단장

-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으나, 법원 전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신광렬 전문위원

- 전문위원들의 독립된 공간 마련 부분은 예산문제 등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정도로 함
- 회의의 기본 구조는 팀별회의를 한 후 총괄팀 회의를 하거나 또는 전체회의를 한 후 총괄팀 회의를 하는 방식, 팀별회의를 하고 전체회의를 한 후 총괄팀 회의를 하는 구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팀별회의, 총괄팀 회의, 전체회의 등의 구조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람
-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 우선 기본적인 원칙만 정하자는 것임

○ 박형관 전문위원

- 총괄팀 회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감
- 팀별회의는 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월 1회 전체회의를 하는 정도로 정하면 될 것 같음

○ 조국

- 연구작업을 하는 1팀·2팀과 달리 총괄팀이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아님
- 총괄팀은 1팀과 2팀 사이의 업무분장 문제나 의견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오늘 같이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총괄팀에서 정리를 한 후 정리된 의견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진선미 전문위원

- 필요에 따라 총괄팀 회의를 하면 되지 반드시 총괄팀 회의를 하나의 단계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이호중 전문위원

- 전체적인 전문위원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음
- 개별 전문위원의 능력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전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회의체 중심의 구조로 생각한다면 전체회의가 중심이 되어야 함
- 팀별 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견이 합치되더라도 전체회의를 거쳐서 전문위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조국 전문위원
 - 1, 2팀 사이의 연구주제를 나누었는데, 전체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함
- 진선미 전문위원
 - 운영세척에서 정할 문제인 것 같음
- 운영지원단장
 - 연구주제와 일정을 정할 때 전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와 전체회의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주형 전문위원
 - 연구주제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므로 전체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함
- 손철우 전문위원
 - 전체회의를 배제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총괄팀의 기능 중 하나가 전문위원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자는 것임
 - 각 팀의 연구가 총괄팀으로 올라오면, 총괄팀에서 전체회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임
 - 총괄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전체위원들의 문제의식 공유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임
 - 팀별회의를 하고 반드시 전체회의를 거쳐야 양형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의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음
- 신광렬 전문위원
 - 1, 2팀은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으며 공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양형기준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이 전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제도 있지만, 팀 내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고 총괄팀에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임

- 이에 관해서도 실무팀에서 정리하기를 바람
- 회의자료를 언제까지 배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운영지원단장

- 주무전문위원들께서 대답하셔야 할 사항임
- 위원회의 경우 7일전에 안전통보를 하면서 동시에 의결안건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고, 보고안건은 3일 전에 보내드림
- 전문위원 회의의 경우에도 5일 내지 3일 정도 이전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음

○ 신광렬 전문위원

- 회의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음
- 그 외 전문위원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이호중 전문위원

- 전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팀별 회의의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함

○ 운영지원단장

- 전체회의는 속기에 의해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팀별 회의는 간사가 회의결과를 정리하겠지만 팀별회의에 속기사 배치는 곤란함

○ 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에 의하면 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도록 되어 있고, 팀별 회의도 회의록이 작성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운영지원단장

- 팀별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은 작성되는데 회의 요지만 들어가고 속기록 자체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임

○ 박형관 전문위원

- 팀별 회의의 경우 팀 자체에서 MP3로 녹음을 하면 운영지원단에서 녹취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음
- 전체회의에 부의 안 되고 팀 회의에서만 부의된 상태에서 위원회에 갈

수도 있으므로 요지만 남는 것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신광렬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바람
- 그 외 구체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에서 정리해서 보고하기 바람
- 연구주제에 관하여 논의하겠음
- 발표자료에 포함된 주제 이외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주제와 연구하고 싶은 주제, 논의 순서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회의 전까지 운영지원단에 제출하거나 지금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최석윤 전문위원

- 큰 주제들은 대부분 제시되었다고 보이므로 큰 주제를 분류해서 작은 주제로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 시간적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곽동우 전문위원

- 전체 로드맵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연구계획안 및 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함
- 실무팀에서 정리하기 바람
- 다음 회의 일정은 8. 10. 금요일 14:00로 정하고, 총괄팀 회의는 8. 10. 금요일 12:30으로 정하겠음
- 워크숍 개최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하기 바람

○ 조국 전문위원

- 좀 더 논의가 성숙한 때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연구 준비를 하는 것이 급하다고 봄
- 워크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음

○ 운영지원단장

- 워크숍의 목적은 연구주제에 대한 세미나와 친목도모를 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이주형 전문위원

- 전문위원들의 지식수준을 동등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 워크숍 개최 시까지 연구를 하고 워크숍에서 발표 및 토의를 하면서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워크숍이 필요함
- 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기준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나라의 양형기준 담당자나 법조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논의를 하는 형식의 워크숍 형태를 제시함
- 운영지원단장
- 외국 양형위원회 방문이나 관련자 초청은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원회 초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외국 양형위원회 관련자들 초청 문제는 워크숍 개최 여부가 결정된 후에 논의할 문제임
 - 워크숍 개최여부는 우리나라의 양형현황이나 외국의 양형기준제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기회를 가질 것인지 또는 각자 연구해서 바로 회의를 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 같음
- 조국 전문위원
- 먼저 운영지원단에서 양형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자료를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양형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자료 및 최종적인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주기 바람
 - 워크숍 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임
- 이호중 전문위원
- 워크숍 주제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하면 전문위원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가 팀별 회의나 전체회의에서 무르익으면 전체회의든 워크숍이든 명칭에 구애될 것 없이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이왕이면 사법연수원 이외의 다른 곳에서 개최하였으면 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연구계획이나 연구주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이호중 전문위원
 - 개별적인 의견을 운영지원단장님께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로 미루었으면 함
- 신광렬 전문위원
 - 8. 10.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 운영방안과 연구계획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고, 또 8. 20.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단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운영지원단장
 -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양형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에 관한 기초 보고를 하였으면 하고, 이는 전문위원단에서 먼저 논의가 된 후에 보고가 되었으면 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전문위원 몇 분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기를 바람
- 박형관
 - 양형의 문제점과 원인에 관한 논의를 하려면 실증적 자료가 필요한데 8. 10.까지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보고를 하기는 어려움
- 운영지원단장
 - 실증적인 자료가 8월에 준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9월에 모아서 논의할 것인지, 8월에 1차 기초자료를 논의하고 9월에 2차로 논의할 것인지 여부임
- 신광렬 전문위원
 - 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전문위원끼리 논의를 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박형관 전문위원
 - 다음 달에 보고하는 것으로 양형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보고형태라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됨

○ 손철우 전문위원

- 최초 보고와 최종 보고라는 2개의 보고 체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의 기초 보고를 3차 회의에서 하고, 실증적인 자료 등에 기초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는 4차 회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광렬 전문위원

- 양형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에 관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시각 그리고 제 3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전문위원이 각각 준비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 바람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음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2007. 8. 10.

양 형 위 원 회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2차 전체회의

1. 일 시 2007. 8. 10.(금) 14:25 ~ 18:25
2. 장 소 대법원 1601호
3. 참석자 별지 기재와 같음
4.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수석전문위원 _____

간 사 _____



참석자명단

| | | | | |
|------|---|--------|---|---|
| 상임위원 | : | 성 | 낙 | 송 |
| 전문위원 | : | 김 | 한 | 균 |
| 전문위원 | : | 박 | 형 | 관 |
| 전문위원 | : | 서 | 보 | 학 |
| 전문위원 | : | 손 | 철 | 우 |
| 전문위원 | : | 신 | 광 | 렬 |
| 전문위원 | : | 이 | 주 | 형 |
| 전문위원 | : | 이 | 천 | 현 |
| 전문위원 | : | 이 | 호 | 중 |
| 전문위원 | : | 조 | | 국 |
| 전문위원 | : | 조 | 은 | 경 |
| 전문위원 | : | 최 | 석 | 윤 |
| 간사 | : | 운영지원단장 | | |



(14시 25분 개회)

- 사회
 - 신광렬 전문위원
 - 개회선언
 -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김한균, 서보학, 조은경 전문위원 소개
 - 제1차 회의 회의록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운영방침 및 연구계획안에 대한 실무팀 논의결과를 듣겠음
- 손철우 전문위원
 - 운영방침 및 연구계획안에 대한 실무팀 회의결과 발표
- 이주형 전문위원
 - 연구계획안에 대한 추가 보고서의 내용은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함
- 사회
 - 운영방침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람
 -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음
 - 운영방침을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람
- 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문위원 운영방침을 중요사항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운영방침에 규정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양형위원회 보고방법 등은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해석함이 적절
 -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국 전문위원
 - 운영방침은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

- 하지만, 전문위원 내부에서 합의하였는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면 수정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전문위원이 조기에 연구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고안건 또는 의결안건 여부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
- 손철우 전문위원
 - 위원회 상정형태에 따라 운영방침의 규범력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음
 - 전문위원 운영방침을 운영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전문위원 내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함
 - 전문위원 내부의 의견을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이 상당
- 이주형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석되므로 운영규정에 부합하게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
 - 두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중요사항이라면 위원장께서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것인데, 다른 위원 의견을 한 분만 들어보고 처리방향을 결정했으면 함
- 조국 전문위원
 - 만약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전문위원 내부에서 합의되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천현 전문위원
 - 현재 논의는 결과적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봄
 - 운영방침을 만드는 목적이 전문위원 내부의 자율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이라면 조국 교수 의견에 찬성
- 최석윤 전문위원

-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느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고 봄
- 조국 교수 의견에 동의함
- 조국 전문위원
 - 제 의견은 위원장에게 맡기자는 의견임
- 사회
 - 전문위원 내부에서 합의되었음을 위원장께 보고하고, 위원장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 이호중 전문위원
 -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의 상정형태는 차이가 있음
 - 운영방침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을 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 짐
 - 전문위원 운영방침을 정하는 것이 위원회가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내부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위원 1차 회의 때 이루어진 논의는 주로 후자였음
 -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박형관 전문위원
 -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
- 사회
 - 안건상정의 형태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부기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겠음
 - 합의된 운영방침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별도로 운영세칙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음

(합의된 전문위원 운영방침은 별지 기재와 같음)

 - 다음 연구계획안에 관하여 논의하겠음
 - 김한균 전문위원께서 연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말씀해주시기 바람

○ 김한균 전문위원

- 연구계획안 초안만 본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 의견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을 기본으로 연구하면서 참고할 만한 외국 제도가 있는 경우 첨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주제 중 1주제(우리나라 양형현황)와 3주제(거시적 양형정책 또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를 통합하여 연구한 후에 전문위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의 양형에 대한 태도와 실무법관들의 양형에 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자는 것이었음

○ 사회

- 연구계획안에 대한 총괄팀 논의 결과를 듣고 토론을 하겠음
- 단장이 총괄팀 논의 결과를 정리해주기 바람

○ 단장

- 42쪽을 참조하시기 바람
- 손철우안, 이주형안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음
- 주로 문제될 것이 연구과제 분장인데, 총괄팀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양형현황은 제1팀이, 양형실무 분석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는 제2팀이 담당하고, 외국 양형제도 연구는 1, 2팀이 안분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연구는 별도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사회

- 연구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안건상정 형태에 관하여 논의하겠음
- 연구계획안은 위원회 심의일시, 일정 등과 관련되어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2007년 연구주제와 주제별 연구시기, 담당자에 대해서만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음

- 전문위원 1,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전체 연구계획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게 될 것임
- 연구계획안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국 전문위원
 - 회의진행자료에는 ‘이견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총괄팀 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확인하였음
 - 즉,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견해의 차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 것인지의 차이가 아님
 - 남아 있는 문제는 2007년도에 전문위원 각자 무엇을 할 것인지를 8. 20. 양형위원회 회의 이전에 정하는 것임
- 박형관 전문위원
 - 실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전문위원들이 주제를 선택하거나 안분할 수 있을 것임
 - 양형실무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가 매우 큰 주제이고, 우리나라 양형현황에 관한 연구보다 시기적으로 우선해야 할 것임
 - 외국 양형제도 연구는 미국과 영국 기타 국가로 대별되고, 미국 쪽이 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
 - 양형실무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지원단의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람
- 단장
 - 제2차 회의자료 205쪽 양형자료조사 업무현황 등 및 285쪽 양형현황조사에 관한 참고사항에 관하여 설명
- 이주형 전문위원
 -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단장
 -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문장 분석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빈번하게 사용

- 되는 문장을 사전에 입력하면 판결문에 기재된 해당 문장을 프로그램이 추적하여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기법임
- 예를 들어, ‘반성을 하고 있고’나 ‘반성을 하지 않고’ 등의 문장을 입력하면 판결문에 해당 부분을 추적하여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것임
 - 텍스트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장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자료를 추출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가능성이 있게 됨
- 이주형 전문위원
- 입력프로그램은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임
- 단장
- 현재 분석관을 위한 입력프로그램은 양형인자의 수에서나 입력방식에 있어서나 미비점이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사회
- 연구 담당팀에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입력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보완이 가능할 것임
- 조은경 전문위원
- 공통 양형인자나 개별 양형인자는 현재 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인지 궁금함
- 단장
- 2003년도 만들어진 양형조사표의 양형인자를 활용하였는데, 당시 규범적인 평가를 거쳐 양형인자를 추출하였고, 2003년 이후 양형조사표가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조은경 전문위원
- 기존 양형인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음
- 박형관 전문위원
- 입력프로그램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 과거 확정된 형사기록에 대한 1년 정도의 DB를 보았음
 - 현재의 분석관 입력프로그램은 주로 장래사건에 대한 것이고, 판결전조

- 사보고서 역시 내용이 부족함
-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함
- 단장
- 입력프로그램의 내용은 얼마든지 개선가능하고, 양형인자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음
 -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그 형태는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므로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내용을 풍부히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임
- 사회
- 회의자료 299쪽 결론 부분에 보면, 양형자료조사에 관하여 전문위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연구팀에서 논의를 해 주고, 이에 기초하여 지원단이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판결전조사보고서를 조기에 제출받아서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데, 8. 20. 3차 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판결전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사항에 관하여 8. 20. 3차 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음
- 조국 전문위원
-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함
- 단장
- 현재 형통사업은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약식사건 중에서 음주운전 등 간단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주형 전문위원
- 형통사업이 축소가 되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정도만 정보가 교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조국 전문위원
- 거의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경찰, 검찰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 집

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함

○ 단장

- 양형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형통사업과도 관련이 있음
- 당초 형통은 기관 사이의 형사사법정보를 교류하는 것으로, 형통 시스템에 의하여 법원 문 앞까지 온 정보를 법원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그런데, 현재는 형통사업의 대상이 축소되어 법원 문 앞까지 오는 정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

- 42쪽에 연구계획안에 관한 손철우안과 이주형안이 정리되어 있음
- 연구하여야 할 주제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음
- 대주제와 소주제로 분류하는 등 주제분류방식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람

○ 박형관 전문위원

- 대주제, 소주제와 관계없이 카테고리는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하나의 카테고리 밑에 있는 것이 소주제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될 수 있고, 손철우 위원도 소주제로 분류한 것도 전체회의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연구팀에서 연구할 소주제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와 연구과제를 담당할 팀과의 역할분담의 문제임
- 연구팀에 과제를 부여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소주제의 내용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기속력을 갖는 정도로 관여할 필요는 없음
- 손철우, 이주형 전문위원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팀에서 연구할 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고, 해당 주제의 세세한 주제에 관해서는 다루어야 할지 여부 정도만 논의하고, 카테고리 안에 있는 큰 내용을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손철우 전문위원

- 소주제는 예시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이주형 위원의 연구주제안과 제 연구주제안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
- 전문위원이 2007년도에 연구해야 할 주제가 무엇이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팀 또는 누가 담당할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고, 주제에 맞는 세부적인 연구사항에 대해서 연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팀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함

○ 이주형 전문위원

- 제가 제시한 분류는 대주제·소주제 분류보다는 주요 과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임
- 양형실무 분석 입력프로그램에 관한 주제는 우리나라 양형현황에 포함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소주제로 분류될 수 없다고 봄

○ 사회

- 손철우안과 이주형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은데, 4개의 과제를 이주형안처럼 확정할 것인지, 3개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음
- 총괄팀에서는 연구과제를 이주형안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최석운 전문위원

- 박형관, 이주형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는데, 보고서에 제시한 과거 양형에 대한 종합분석 시스템이 단장이 설명한 것과 다른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함

○ 박형관 전문위원

- 분석관 시스템은 대표죄명별로 양형인자를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이, 죄명이 다수인 경합범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이므로 이를 고려한 입력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
- 버지니아 주 양형인자는 200-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계분석을 위한 양형인자는 많을수록 좋음
- 죄명에 따라 공통사항에서도 차이가 나낼 수 있음

- 단장
 - 현재 분석관 입력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경합범과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양형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석윤 전문위원
 -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양형현황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입력시스템 개선 문제는 컴퓨터나 통계분석 전문가가 검토할 문제임
 - 사회
 - 입력프로그램에 담아야 할 내용만 전문위원이 정하면 나머지는 지원단이 집행할 문제일 것임
 - 연구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도에 4개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음
 - 연방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미국의 경우 연구할 주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 조국 전문위원
 -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은 어떤 이유에서 포함되었는지 궁금함
 - 이주형 전문위원
 - 손철우 위원 의견에 캘리포니아, 뉴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두 주는 양형기준제도가 없는 주임
 - 캘리포니아, 뉴욕 주를 연구하는 대신 최근에 기준을 만든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연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음
 - 모델형법 양형편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함
 - 조국 전문위원
 - 미국의 모든 주를 연구할 수 없으니 특징에 따라 유형별로 몇 개의 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손철우 전문위원
-

-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주 만을 연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양형기준이 없더라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회의자료 13쪽에 기재되어 있는 선정기준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미시건, 버지니아, 워싱턴 D.C.를 선택한 것임
- 이주형 전문위원
 - 미국의 어느 주를 연구할지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인지 연구팀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사회
 - 전문위원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할 주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박형관 전문위원
 - 미국 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선정이 가능함
 - 오늘 전체회의에서 5-6개 주로 압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사회
 - 꼭 연구해야 하는 주를 전체회의에서 정하고, 다른 주는 개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최석윤 전문위원
 -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는 양형기준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외국 제도를 연구했지만, 지금 외국의 현황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임
 - 양형기준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방과 주 중에 몇 개만 추출하여 연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정 기준을 결정하면 될 것임
- 사회
 - 전체회의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우면 팀별 회의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임
 - 외국 양형제도 연구 주제를 팀별로 배분하려면 업무량을 예상하기 위해 서라도 연구할 주가 결정되어야 함

- 조국 전문위원
 - 미국과 영국 기타 국가로 대별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연방과 현재 양형기준이 없는 주, 권고적인 제도를 취한 주와 기속적인 제도를 취한 주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임
 - 영국 기타 국가의 경우 영국과 독일, 일본, 뉴질랜드, 호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정도가 되면 업무량에서도 비슷한 정도가 될 것임
- 손철우 전문위원
 - 조국 위원 의견에 동의함
- 사회
 - 그러면 조국 위원 의견에 따라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 과제를 팀별로 안분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최석윤 전문위원
 - 영국에 대해서는 1팀의 김한균 위원이 전문가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음
- 조국 전문위원
 - 1팀에는 독일에 밝으신 서보학 교수님이 계시므로 1팀이 영국 기타 국가를 담당하고, 2팀이 미국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사회
 - 그러면 1팀이 영국 기타 국가를, 2팀이 미국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겠음
- 조은경 전문위원
 - 최근 캐나다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캐나다의 양형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음
 - 캐나다를 연구할 것을 추천함
- 김한균 전문위원
 - 양형기준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 미국과 영국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가 미국식과 영국식을 절충한 양형기준제를 취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국가이므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음

○ 사회

- 구체적으로 연구할 주와 국가는 연구 담당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 4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연구를 담당할 팀에 관하여 논의하겠음
- 총괄팀에서는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기초해서 팀별회의 토론 후 정리된 쟁점과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람
(다수 전문위원이 찬성)
- 그러면 연구팀은 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하겠음
- 구체적으로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조국 전문위원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연구시기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함

○ 사회

- 11월 초순경까지 연구를 종료하는 것임
- 법원은 손철우 전문위원, 검찰은 이주형 전문위원, 학계에서는 이호중, 이천현 전문위원으로 하겠고, 변호사는 보류하겠음

(16시 24분 휴회 16시 45분 속개)

○ 사회

- 해외출장계획이나 공청회 등 개최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이호중 전문위원

- 연구팀에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외출장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할 것이고, 공청회 등은 총괄팀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사회

-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해외출장계획과 공청회 등은 이호중 위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음
- 김한균 위원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국 전문위원

- 우리나라 양형현황과 양형기준제에 관한 연구를 1년 정도 충실하게 하여 기초보고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은 바람직하지만, 양형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저작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회

-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지원단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람

○ 단장

- 연구용역이 체결된 경우에는 저작권은 발주처가 갖게 될 것이므로 연구용역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될 것임
- 이 경우 보고서 작성자가 저작권을 갖게 되고,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임.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 외부의 학술지 등에 게재됨으로써 논의가 위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외부가 논의의 주된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발표 시기만 위원회 심의의결 이후로 해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 조국 전문위원

- 연구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주형 전문위원

- 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논의의 장을 넓히는 장점도 있음

- 조국 전문위원
 - 학술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논의의 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봄
 - 다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위원회가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부 학술지에 발표하겠다는 보고는 필요할 것임
- 단장
 - 예컨대, 캐나다의 양형기준제 등과 같이 단발성 주제인 경우에는 문제가 적으나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에 관한 연구와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주제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조국 전문위원
 - 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학술 논문에 발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사회
 - 전문위원 회의나 위원회 보고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봄
- 이천현 전문위원
 - 참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연구 보고서가 연구원에서 출간되기 전에 학술지에 먼저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조국 전문위원
 -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될 것 같음
- 최석윤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문위원 회의나 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발표가 가능한 것으로 하면 됨
- 이호중 전문위원
 - 반대로, 원칙적으로 발표할 수 있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손철우 전문위원
 - 위원회 보고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되어서 양형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 서 먼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
- 위원회 보고 이후에는 민감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자제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임
- 조국 전문위원
- ‘전문위원 보고서는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음, 다만, 발표시기는 위원회 보고 이후로 한다.’로 정하면 될 것으로 봄
- 사회
- 조국 교수님 의견과 같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람
- 김한균 전문위원
- 제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임
 - 즉, 양형위원회 명의를 출판물에 실린 보고서를 연구자가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 등임
- 조국 전문위원
- 그것은 발주하는 사람과 발주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일 것으로 봄
- 단장
- 두 가지 형태의 공개가 예상됨
 - 하나는 위원회 명의를 백서 형태로 공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위원 보고서 형태로 전문위원 명의로 공개되는 것임
- 이호중 전문위원
- 전문위원 보고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함
 - 다른 문제는 전문위원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장이 담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후자의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지만, 전문위원 각자의 도덕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봄
-

- 단장
 - 전문위원 보고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있음
- 사회
 -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새로 작성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고, 이 경우 주무전문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보충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되는 정도일 것임
- 이주형 전문위원
 - 운영방침에서는 최초보고서를 기초로 논의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사회
 - 전문위원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되, 그 시기만 위원회 보고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음
 - 시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과 실무법관의 양형에 관한 인식 조사는 총괄팀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이상 연구계획안에 관한 논의를 마치겠음
 - 다음 우리나라 양형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발표를 들겠음
- 손철우 전문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 양형현황에 관한 기초보고」에 따라 발표
- 이주형 전문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에 따라 발표
- 이호중 전문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 양형현황의 문제점 - 양형기준 설정시 검토가 필요한 양형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에 따라 발표
- 사회
 - 세 전문위원의 발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간 관계 상 더 이상의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 원칙적인 회의 종료시간을 정하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람
-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음
- 전체회의는 원칙적으로 몇 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단장

- 중요한 논의가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오후 6시 이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오후 6시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의 내용을 설계하도록 하겠음

○ 사회

- 그럼 오후 6시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음
- 각 팀에서 담당할 연구과제는 8. 20.까지 전체 전문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팀별 연구계획안을 작성해 주기 바람

○ 조국 전문위원

- 팀별 연구계획안 작성에 관하여 팀장이 정하는 것이 좋겠음

○ 박형관 전문위원

- 회의 종료 이후에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음

○ 사회

- 전체회의 일정 등 그 밖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람

○ 박형관 전문위원

- 팀별 회의를 대법원 청사 외부에서 개최한 경우 비용 등 지원 사항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사회

- 단장이 검토하여 말씀하시기 바람
- 3차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겠음

- 제시된 일정안에는 9월 10일 월요일안과 9월 14일 금요일안이 있음
- 손철우 전문위원
 - 보고서를 준비해 보니 하루가 아쉬운 경험을 하였음
 - 9월 14일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금요일이 적절하다는 전문위원 다수 의견 제시됨)
- 사회
 - 9월 14일 오후 2시에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겠음
 - 향후 전체회의 일정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음
 - 8월 20일 오후 4시에 양형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되므로 전문위원들께서 참석하시기 바람
 - 8월 20일까지 팀별회의 일정을 작성해서 제시하기 바람
 - 이상 회의를 마치겠음

(18시 25분 폐회)

전문위원 운영방침

1. 수석전문위원, 제1·2 팀장 및 전문위원의 관계

수석전문위원과 제1·2 팀장 및 전문위원은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2. 주무전문위원의 지정

- (1) 주무전문위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2) 다양한 연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복수의 주무전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3) 주무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주무전문위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무전문위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양형위원회에 제출된다.
- (4) 수석전문위원 및 팀장도 주무전문위원이 되거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회의

(1)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은 총괄팀에서 임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팀별회의

-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전체회의가 월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팀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팀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팀장은 해당 팀 소속 전문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전체회의와 팀별회의의 관계

① 총괄팀 논의를 거쳐 주무전문위원이 제1, 2팀 구분 없이 지정되어 전체 전문위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 2팀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 2팀별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팀 회의 후 총괄팀회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연구주제를 논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4) 회의소집 방법

회의 소집권자는 운영지원단을 통하여 전문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한다.

(5) 회의 일정 등의 통지

운영지원단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한다. 다만 이미 구두 통지된 경우에는 운영지원단의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6) 회의 자료의 배부

운영지원단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모든 전문위원에게 배부한다. 팀별 회의 자료도 모든 전문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7) 회의의 속기

① 전체회의는 속기원으로 하여금 속기하도록 한다.

② 팀별회의는 해당 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녹음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단은 각 팀에서 요구하는 경우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한 속기록을 작성·제공한다.

(8) 속기록,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 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체회의는 속기록도 작성한다.
- ② 운영지원단은 회의록, 속기록과 팀별회의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물을 2년간 보존한다.

(9) 회의 결과의 공개

회의 경과와 회의 결과의 요지를 공개한다.

(10) 회의 장소

팀별회의는 팀 자율적으로 대법원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4.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제1, 2팀 보고서

- ① 제1, 2 팀장은 팀별회의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 전문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총괄팀에 제출하되, 쟁점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경우 보고서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기재한다.
- ② 제1, 2 팀장은 주무전문위원 등 전문위원 개인의 보고서(의견서 포함)도 총괄팀에 함께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

- ① 수석전문위원은 안전에 따라 총괄팀회의 또는 전체회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팀 전문위원 또는 모든 전문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수석전문위원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경우 보고서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무전문위원 등 전문위원 개인의 보고서(의견서 포함)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5. 양형위원회 보고 방법

- (1)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연구결과를 요약 보고한다.

- (2)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세보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위원은 상세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전문위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장이 허가한 경우 상세보고를 할 수 있다.

6. 전문위원의 양형위원회 회의 배석

- (1) 전문위원은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 (2) 주무전문위원 또는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전문위원은 해당 안전이 심의되는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야 한다.
- (3)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위원은 양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야 한다.

7. 연구반의 구성·운영

수석전문위원은 총괄팀 또는 전체회의를 거쳐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3인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8. 운영지원단에 대한 설명 요청

전문위원은 운영지원단장에게 전문위원의 조사·연구업무 및 회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